

서 면 답 변 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 문 자	박 찬 원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주민복지과장)	일 자	질의	2018년 11월 30일
			답변	2018년 12월 3일
회 의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문요지

- 2018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대상자 내역

답변내용

- 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희망 키움 통장 I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내용	가입자가 매월 저축(5·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별도 계산) 지원
희망 키움 통장 II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내용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통장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내일키 움통장	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내용	저축액(5,10만원)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동안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 수익금 별도 분배적립
청년희 망키움 통장	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15~34세)
	내용	매월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별도)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희망키움통장 I

- 예 산 액 : 23,909천원(국19,127, 군4,782)

- 지원현황 : 4가구, 16,060천원

- 지급기준 : 근로소득장려금 산식에 따라 적립, 3년 내 탈수급 시 지원

(단위 : 천원)

연 번	성 명	지원금액	비 고
계		16,060	
1	김00	4,270	10개월 지원
2	박00	5,010	10개월 지원
3	박00	1,770	5개월 지원
4	이00	5,010	10개월 지원

○ 희망키움통장 II

- 예 산 액 : 30,364천원(국24,291, 군6,073)

- 지원현황 : 20가구, 16,380천원

- 지급기준 :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 및 매칭 후 지원

(단위 : 천원)

연 번	성 명	지원금액	비 고
계		16,380	
1	유00	500	5개월 지원
2	정00	500	5개월 지원
3	김00	800	8개월 지원
4	김00	800	8개월 지원
5	김00	400	4개월 지원
6	김00	1,100	11개월 지원
7	조00	1,100	11개월 지원
8	박00	1,100	11개월 지원
9	방00	1,000	10개월 지원
10	이00	1,100	11개월 지원
11	전00	800	8개월 지원
12	황00	500	5개월 지원
13	남00	1,100	11개월 지원
14	송00	1,100	11개월 지원
15	조00	900	9개월 지원
16	박00	1,190	12개월 지원
17	이00	1,190	12개월 지원
18	김00	400	4개월 지원
19	이00	400	4개월 지원
20	지00	400	4개월 지원

○ 내일키움통장

- 예 산 액 : 7,903천원(국6,322, 군1,581)

- 지원현황 : 7가구, 4,700천원

- 지급기준 : 3년 내 탈수급 시 본인저축액(5,10만원) 매칭 및 지원

(단위 : 천원)

연번	성명	지원금액	비고
계		4,700	
1	고000000	900	9개월 지원
2	박00	900	9개월 지원
3	박00	300	3개월 지원
4	최00	900	9개월 지원
5	김00	400	4개월 지원
6	이00	400	4개월 지원
7	임00	900	9개월 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예 산 액 : 12,149천원(국9,719, 군2,430)

- 지원현황 : 3가구, 4,110천원

- 지급기준 : 근로소득장려금 산식에 따라 적립(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별도)

※ 본인 저축 없음

(단위 : 천원)

연번	성명	지원금액	비고
계		4,110	
1	백00	54	1개월 지원
2	심00	1,146	6개월 지원
3	김00	2,910	6개월 지원

○ 가입 저조사유

- 가입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연락, 우편발송,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입 권유·유도 중이나, 저축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대상자 가입 거부